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제도 이행

Q&A

모음집

2022.11





- 본 자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해당 기업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 검토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검토 후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법규 확인과 관할기관에 질의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된 모음집이며, 해당 자료를 통해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사고 예방에 기여되길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제도 이행

Q & A

모음집

2022.11



Contents



I.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제도란?

1. 확인·신고	08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분류	09
3.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절차	10
4. 대표제품과 파생제품 구분	10
5. 표시·광고의 제한	12
6.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 구분	13

II. 제도 이행 Q&A

1. 확인·신고

Q1-1. DIY 제품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대상인가요?	17
Q1-2. 용기가 파손되어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결과서를 받았는데, 용기검사만 별도로 진행할 수 있나요?	18
Q1-3. 카센터에서만 사용하는 제품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19
Q1-4. 반려동물 용품의 악취를 없애는 탈취효과도 있으면서 살균효과도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탈취제, 살균제 품목 중 어떤 품목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
Q1-5. 신고가 완료된 세탁세제에 살균기능이 있다면, 살균제 품목으로도 확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21
Q1-6. 오븐, 렌지후드, 주방식기용으로 개발한 세정제 제품이 있습니다. 주방식기류를 세정하는 용도를 추가하여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
Q1-7.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부터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품까지 관리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23
Q1-8. 해외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는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
Q1-9. 대표제품 성분을 변경하고 싶은데, 안전기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25
Q1-10. 살균제의 사용가능 주성분이 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
Q1-11. 안전확인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재고제품의 판매가 가능한가요?	27
Q1-12. 신고증명서만 발급 받으면 바로 판매 해도 되나요?	28
Q1-13.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 관리해야 하는 자료가 있나요?	29
Q1-14. OEM 제품과 ODM 제품은 신고주체가 서로 다른가요?	30
Q1-1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단순 소분하여 판매 하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31
Q1-1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대상여부 FAQ	32

2. 파생 신고

Q2-1. 다양한 향의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향이 바뀔 때마다 시험·검사를 다시 해야 하나요?	35
Q2-2. 24색의 염색제 세트를 판매할 때, 세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색에 대해서 모두 확인·신고 해야 하나요?	36
Q2-3. 석고방향제 리필오일은 안전기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37
Q2-4. 사용시에 제거되는 장식재가 변경될 때도 파생신고 대상인가요?	38
Q2-5. 대표제품의 용기는 유리이고 파생제품의 용기는 도자기일 때 용기시험이 필요한가요?	39
Q2-6. 석고방향제에 채색을 하면 사용하는 색상마다 파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40

3. 변경 신고

Q3-1. 용기 재질과 용량이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요	43
Q3-2. 다른 용기에 들어서 쓸 수 있는 보충형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44
Q3-3. 이미 신고한 제품의 제품명을 다르게 판매하고 싶어요.	45
Q3-4. 사업장 정보가 변경되어 대표제품을 변경신고 하였습니다. 파생제품도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46
Q3-5. 지인의 회사와 합병하였습니다. 기존에 신고를 완료한 제품을 합병된 회사 명의로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

4. 갱신 신고

Q4-1. 갱신을 위한 시험검사는 언제까지 다시 받아야 하나요?	49
Q4-2. 갱신을 위한 시험검사는 기존 대표제품과 반드시 같은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해야 하나요?	50
Q4-3. 기존 대표제품과 안전기준 물질이 달라진 경우에 갱신 신고 가능한가요?	51
Q4-4. 유효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갱신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52
Q4-5. 파생제품 갱신신고는 언제해야 하나요?	53
Q4-6. 기존에 신고했던 대표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파생제품을 대표로 갱신 접수가 가능한가요?	54

Contents



5. 표시기준

Q5-1. 제품 겉면이 작아 표시 문구를 다 넣을 수 없어요.	57
Q5-2. 식물추출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향오일을 수입하여 판매할 때, “자연친화적”이라는 광고를 해도 되나요?	58
Q5-3. 수입 제품에 해외에서 획득한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경우 마크를 활용하여 광고를 해도 되나요?	59
Q5-4. 향초의 모양 때문에 표시사항을 붙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0
Q5-5. 자동차 실내·외 겸용으로 사용되는 세정제의 사용상주의사항 필수문구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1
Q5-6. 표시도안에서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작성 시 기타물질에는 어떤 성분을 기재해야 하나요?	62
Q5-7. 제조연월은 1차포장과 2차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나요?	63
Q5-8. 용량을 범위로 신고했는데 표시도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64

6. 어린이보호포장

Q6-1. 저희 제품이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래요.	67
Q6-2. 캡슐형 세탁세제가 어린이보호포장에 포함되었대요.	68
Q6-3.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대표제품의 파생제품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어야 하나요?	69
Q6-4. 가정에서 보관하지 않는 전문가용 제품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가요?	70

7. 수입·통관

Q7-1. 제품을 수입해야 하는데 통관이 거절 되었어요.	73
Q7-2. 시험·검사를 위한 샘플을 수입 통관하는 경우에도 수입요건확인번호가 필요한가요?	74
Q7-3. 수입요건확인번호를 받은 제품의 수입량 등을 변경하고 싶어요.	75
Q7-4. 안전기준적합확인을 위해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입요건확인번호를 먼저 신청 할 수 있나요?	76
Q7-5.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77

8. 효과·효능 표시·광고

Q8-1. 세탁세제에 '찌든 때 제거 99 %'도 효과·효능 입증 자료 제출 대상인가요?	79
Q8-2. 살균제 제품의 표시사항에 “살균”, “항균”이라는 단어만 기재하려고 합니다. 효과·효능 관련 시험을 진행해야 하나요?	80
Q8-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시험·검사 기관에서 받은 성적서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	81
Q8-4. 효과·효능에 대한 입증자료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82
Q8-5. 시험 성적서는 가지고 있는데 효과·효능 광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83
Q8-6. 신고 완료 후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84

9. 위해성평가

Q9-1.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을 제조하는데 방출량 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87
Q9-2. 마스크용 방향제 패치는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나요?	88
Q9-3. 사용가능 주성분 외 물질을 살균제 주요물질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89

[부록] 제조 공정 단계별 부적합 제품 발생 원인

A. 같은 향을 사용하여 디퓨저와 석고방향제를 만들었는데, 석고방향제만 시험·검사기관에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94
B. 향균 기능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습니다.	95
C. 방향제의 향을 변경하였더니 시험·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96
D. 물체 도색제에서 벤젠이 검출되었습니다.	97
E. 방향제에서 메탄올이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98
F. 특수목적코팅제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습니다.	99
G.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방향제가 불합격 되었습니다.	100
H. 수작업으로 제조한 미용접착제가 불합격 되었습니다.	101
I. 녹 방지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되었습니다.	102
J. 원료나 제조 과정에서 폼알데하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품에서 검출되었습니다.	103
K. 미용 접착제를 팔고 있는데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104
L.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판매했는데, 위반제품이라고 합니다.	105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제도 이행
Q&A 모음집

01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제도란?

1.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개요



환경부장관이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고시”라 함)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14분류 43개 품목으로 이 중 36개 품목은 신고대상, 7개 품목은 승인대상 품목으로 관리

분류	품목		신고 ¹⁾ /승인 ²⁾
제1부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신고
제2부 세탁제품	1. 세탁세제 3. 섬유유연제	2. 표백제	신고
제3부 코팅제품	1. 광택코팅제 3. 녹 방지제 5. 다림질보조제 7. 경화제	2. 특수목적코팅제 4. 윤활제 6. 마감제	신고
제4부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3. 경화촉진제	2. 접합제	신고
제5부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신고
제6부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신고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신고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2. 인주	신고
제9부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신고
제10부 여가용품 관리제품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신고
제11부 살균제품	1. 살균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2. 살조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신고 승인 신고 승인
제12부 구제제품	1. 기피제 3. 보건용 기피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2. 보건용 살충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신고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제13부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신고
제14부 기타	1. 초 3. 인공 눈 스프레이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2. 습기제거제 4. 공연용 포그액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승인

* ¹⁾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한국환경산업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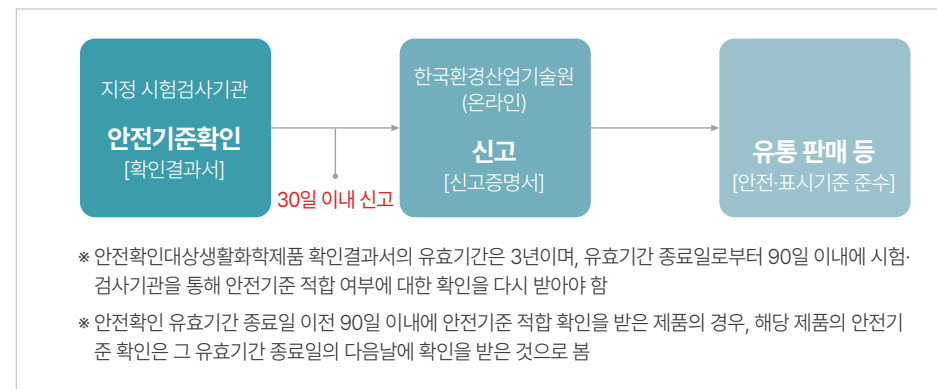
²⁾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국립환경과학원)



3.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절차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및 신고 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유통·판매



4. 대표제품과 파생제품 구분



대표제품은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파생제품은 파생신고만 진행



파생제품 정의

정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대표제품)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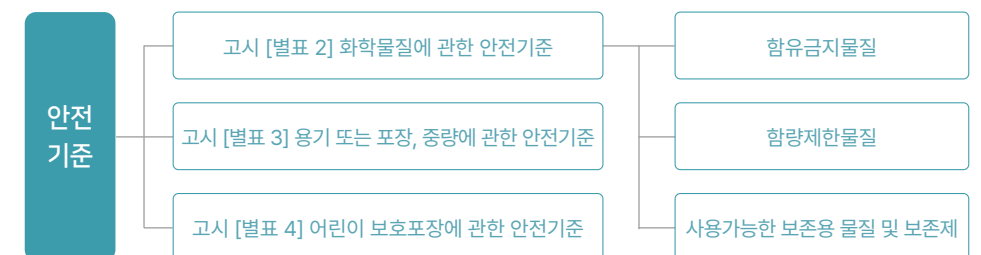
- 용도와 제형이 동일,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고시 제5조)에 변경이 없는 제품
-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음

주의

- 파생으로 신고된 제품은 대표제품과 동일한 신고번호 부여
- 안전기준 등 위반시 동일한 신고번호가 부여된 제품은 모두 회수 등 행정조치
- 기업에서 파생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안전기준이란?

- 화학제품안전법 제9조 및 고시 제5조에 따라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5. 표시·광고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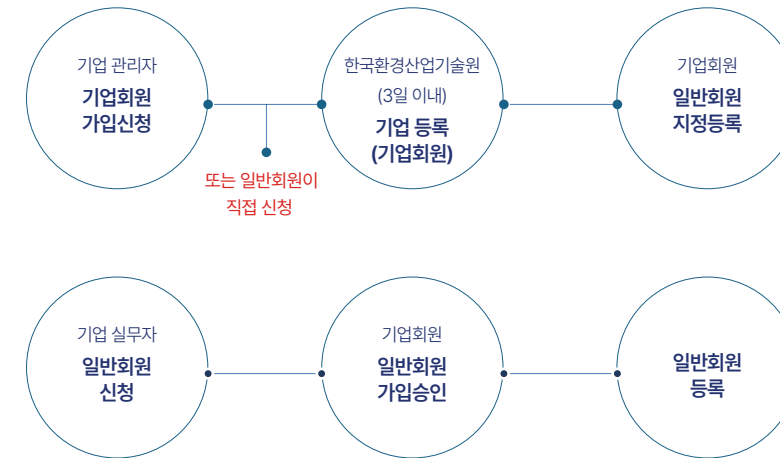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해당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제1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표시기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무독성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독성 없음 (Non-Toxic, Toxic zero)
환경·자연 친화적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천연 ¹⁾ ,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추출 ²⁾ , 순수(Pure), 순(純) ³⁾
무해성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인체·동물 친화적	인체·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이와 유사한 표현	1) 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 제외 2) 자연에서 유래·추출한 물질명·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외 3) 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6.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 구분



구분	담당 업무 범위
기업회원	기업 정보 / 일반회원 관리 / 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문서 접수 및 관리
일반회원	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 살생물물질 승인 / 살생물제품 승인 등

※ 기업회원은 신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원칙, 단 1인 사업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고 업무 수행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제도 이행
Q&A 모음집

02

제도이행 Q&A

1. 확인·신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하는 제도



관련 조항 및 참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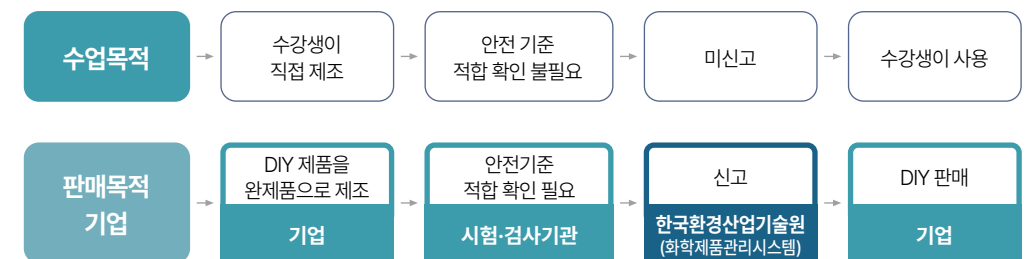
- 제2조(정의), 제6조 [표시기준]
-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부록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도안 예시
- [별표 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별표 7]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제출 제품·서류의 작성범위 및 방법
-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별지 제5호 서식] 제품 내 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

Q1-1. DIY 제품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대상인가요?

방향제와 초를 만드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방을 운영하면서 제품 제조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방향제나 초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 수업도 운영 중입니다. 요즘 초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강생들이 초 만드는 원재료를 구매하고 싶다고 문의를 합니다. 원재료는 별도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묶어서 판매하는 DIY (do-it-yourself) 제품의 경우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A. DIY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대상입니다.

초의 원재료인 심지, 베이스 등을 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이 아니므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묶어서 판매하는 DIY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됩니다. 수강생들에게 판매하기 전에 DIY 제품의 재료들을 사용하여 배합비 대로 완제품을 제조한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청서에 물질별 배합비율을 명시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확인 및 신고를 진행 한 후 판매하셔야 합니다. 단, 체험 수업 중에 원재료를 가지고 수강생이 만든 후 수강생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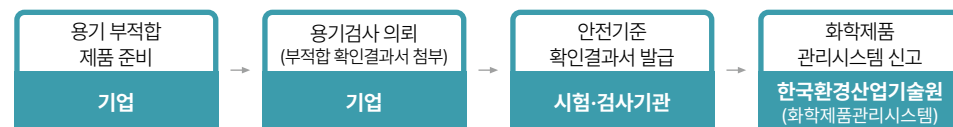
< DIY 제품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절차 >

Q1-2. 용기가 파손되어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결과서를 받았는데, 용기검사만 별도로 진행할 수 있나요?

저희는 할인매장에 저가의 방향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방향제 생산업체입니다. 제품 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비교적 저렴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용기강도 시험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되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변경하여 다시 시험·검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비용이 부담됩니다. 용기검사만 다시 진행하여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결과서를 받을 수 없을까요?

A. 용기검사에 대하여 부적합 시,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재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시험 부적합 시 용기를 변경한 제품을 안전기준 적합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이전에 받은 부적합 확인결과서를 함께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해 주세요. 신청하는 제품의 내용물은 이전에 시험·검사를 진행하였던 부적합 제품과 동일해야 합니다. 용기검사를 다시 진행하여 문제가 없다면 기존에 받은 확인결과와 다시 받은 용기 안전기준 확인결과 상의 적합한 내용을 모두 반영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결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용기시험 부적합 제품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절차 >

Q1-3. 카센터에서만 사용하는 제품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서울에서 조그마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용품 공급사에서 정비 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며, 손님들의 자동차 정비 시 사용하는 자동차용 부동액과 워셔액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간혹 자동차 용품을 공급해주는 회사에서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없는 제품을 보내주기도 하는데 일반 생활공간이 아닌 카센터와 같은 특정 공간에서만 사용하는 부동액과 워셔액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확인·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A. 카센터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용 부동액과 워셔액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대상입니다.

카센터와 같이 특정 공간에서만 사용하는 부동액과 워셔액 제품이라도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공장의 생산공간, 자동차 정비소의 정비공간 등)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4. 반려동물 용품의 악취를 없애는 탈취효과도 있으면서 살균효과도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탈취제, 살균제 품목 중 어떤 품목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애견분양과 애견용품을 판매하는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요청으로 반려동물 용품의 악취를 없애는 탈취효과도 있으면서 살균효과도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탈취제와 살균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려동물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탈취제, 살균제 품목 중 어떤 품목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각 품목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살균제와 탈취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이 맞지만 각 품목의 적용 대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체·동물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은 해당 되지 않으며, 물체와 공간(탈취제만 해당)에 사용하는 제품이 해당됩니다. 만약, 살균제와 탈취제를 애견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애견 용품(하우스, 배변패드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됩니다. 적용 범위를 확인하여 해당될 경우 다품목 제품(살균제·탈취제)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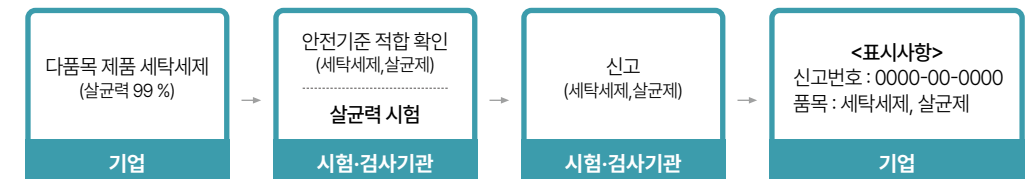


Q1-5. 신고가 완료된 세탁세제에 살균기능이 있다면, 살균제 품목으로도 확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능성 세탁세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세탁 후 빨래를 실내에서 건조하여도 눅눅한 냄새 없이 상쾌한 향을 유지하며, 세탁세제 안에 향균물질을 첨가하여 의류나 섬유에 서식하는 균을 제거합니다. 현재, 세탁세제 품목으로 신고를 마친 상황인데 살균 기능이 있다면 살균제 품목으로도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A. 세탁세제에 살균 기능이 있다면, 살균제 품목으로도 확인·신고를 진행하세요.

제조하시는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세탁세제와 살균제 품목에 모두 해당하는 다품목 제품입니다. 다품목 제품은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모두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대상입니다. '살균, 향균'과 같은 문구를 제품 라벨에 표기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살균력 시험과 함께 세탁세제, 살균제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모두 진행한 후 살균력 효과·효능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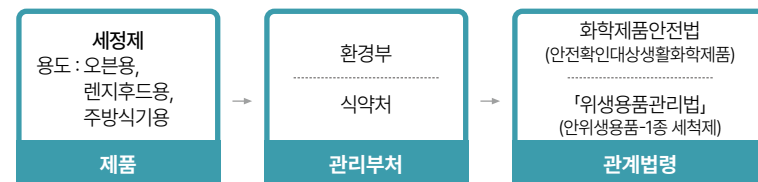
< 다품목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절차 >

Q1-6. 오븐, 렌지후드, 주방식기용으로 개발한 세정제 제품이 있습니다. 주방식기류를 세정하는 용도를 추가하여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정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다용도 세정제로 오븐, 렌지후드, 주방식기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제품 세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세정제 품목으로 신고를 진행하던 중에 기타표면세정용 용도로 주방식기류 세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타법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정제와 주방식기류 세척제 용도로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 제품의 용도가 여러 법의 관리대상이라면 각 법의 기준을 준수해 주세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세정제는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주방식기류 세척 등 위생용품 세척제는 식약처의 「위생용품관리법」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일반 물체용 세정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와 주방식기류 세척제(위생용품)용도의 다용도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과 「위생용품관리법」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등 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제품 용도 적용 범위에 따른 관련 법령 >

Q1-7.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부터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품까지 관리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세탁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를 하지만, 숙박업소에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하는 공장에게도 납품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성분으로 제조하여 각각 납품을 할 예정인데, 어느 범위까지 관리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세탁제품에 대한 관리대상 범위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보관·사용되는 제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로, 해당 공간에서 사용되는 세탁제품은 관리대상 제품입니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작업공간의 범위에 해당하는 세탁 공장이라면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유통판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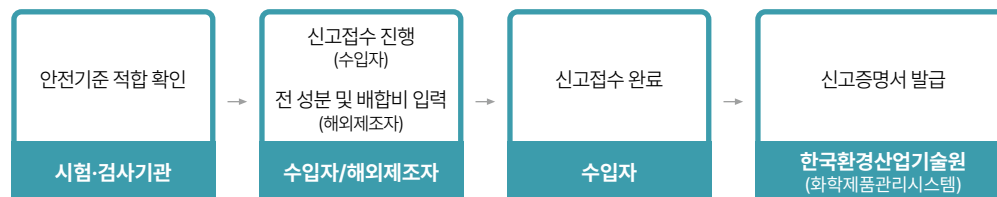


Q1-8. 해외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는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완제품의 광택 코팅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진행하고자 해외 제조업체에게 수입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가 기재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제품에 대한 MSDS 자료는 제공해 줄 수 있으나, 전 성분과 배합비는 대외비라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품 내 전 성분 및 배합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확인·신고를 마치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외 제조업체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제품의 전 성분 및 배합비를 직접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의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는 시험·검사기관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제조자가 수입자에게 성분 및 배합비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해외 제조자가 직접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 시 수입자가 해외 제조자의 메일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있으며, 입력한 해외 제조자의 메일주소로 입력 방법과 접속 링크가 연결되어 발송됩니다. 이 방법으로 해외 제조사가 전 성분 및 배합비를 '입력완료'하면 그 후 수입자가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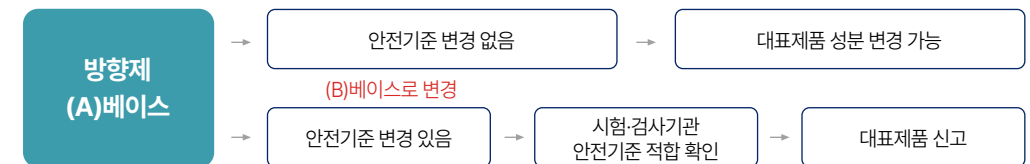
< 해외 제조자 성분 입력 시 확인·신고 절차 >

Q1-9. 대표제품 성분을 변경하고 싶은데, 안전기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베이스를 납품받아 방향제를 만들어 신고 완료 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발향이 더 잘되는 베이스가 개발되었다고 해서 (B)베이스로 변경해서 방향제를 제조하고 싶은데,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을 비교하였을 때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성분 및 배합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안전기준확인 검사를 받고 신고해야 하나요?

A. 탁제품에 대한 관리대상 범위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보관·사용되는 제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제품과 성분 또는 배합비가 변경되면서, 안전기준과 관련된 성분이 변경되었다면 파생제품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존 대표제품과 같이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제품 성분 변경 시 신고 절차 >

Q1-10. 살균제의 사용가능 주성분이 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균제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알칼리 이온수와 차아염소산수를 각각 원료로 하여 살균제를 제조하여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까지 완료하고 표시사항까지 이행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가능 주성분에 대한 함량 기준이 추가된 물질과 사용가능 주성분에서 삭제된 주성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고증명서를 받고 이미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를 확인해주세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부칙 제5조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이미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제품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준비하는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무조건 만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준을 만족하고 제품에 변경되는 사항이 없으시다면 별도의 변경절차는 불필요하며 자체적으로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Q1-11. 자가검사번호(신고번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재고 제품의 판매가 가능 하나요?

2018년에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번호를 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자가검사번호의 유효기간이 곧 만료 되는데, 재고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해우려제품이 폐지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재고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한건가요?

A. 제조일(자가검사 유효기간내)이 명확히 표시된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 화평법의 절차에 따라 자가검사를 받은 위해우려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보며, 최초 검사일로부터 3년 간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일(수입일)기준 유효기간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의 재고 판매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제조일(수입일)이 명확히 표시되어야만 합니다.



Q1-12. 신고증명서만 발급 받으면 바로 판매해도 되나요?

2017년도부터 방향제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만 진행하다가 올해부터 제품을 판매하고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의 절차를 거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까지 완료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일 때는 신고만 완료하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도 신고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나요?

A. 신고증명서 뒷면의 “안전기준적합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읽어주세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제품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신고증명서의 뒷면에 안전기준적합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표시사항을 이행하시어 판매하셔야 합니다.



Q1-13.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 관리해야 하는 자료가 있나요?

물티슈를 제조하는 공장 대표입니다. 현재 저희는 위생용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식약처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이번에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살균 물티슈)를 제조하고자 합니다. 식약처는 인증을 받은 후 공장의 설비나 기업에 대한 자료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생활화학제품(환경부)는 어떤 서류들을 기업에서 관리해야 하나요?

A.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전자문서 포함)을 보관해야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별도의 고시된 양식은 없으며 기업 내부적으로 해당 서류를 갖추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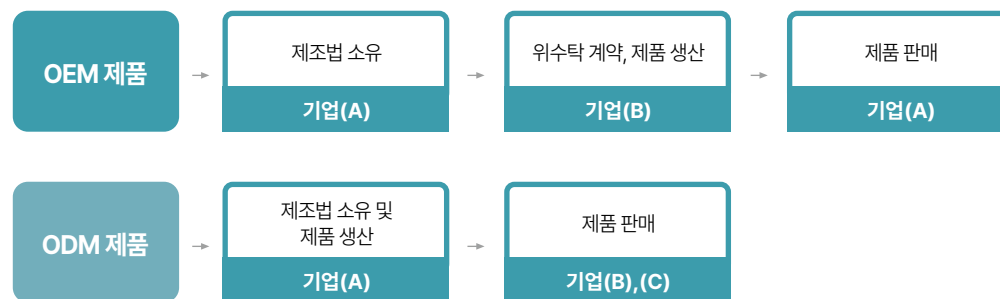
< 보관해야 하는 기록물(전자문서 포함) >

Q1-14. OEM 제품과 ODM 제품은 신고주체가 서로 다른가요?

세정제를 만들어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세정제의 성분 및 배합비 등 제품에 대한 제조법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사업장이 크지 않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 시설이 있는 기업에게 제품 생산을 맡겨 완제품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A.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주체는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등 제조법의 소유주가 하셔야 합니다.

OEM 제품(주문자 위탁생산 방식)은 기업(A)가 제품에 대한 성분 및 배합비 등 제품의 제조에 관한 제조법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 또는 생산 시설이 없어 위수탁 계약 등을 통해 기업(B)에게 제품 생산만 의뢰하는 것으로 제품 판매 및 신고주체는 기업(A)가 됩니다. ODM 제품(제조사 개발생산 방식)의 국내 제조 제품은 기업(A)가 제품을 생산 후, 기업(B), (C) 등 여러 업체에 납품하여 기업(B), (C)에서 판매되는 경우이며, 신고 주체는 기업(A)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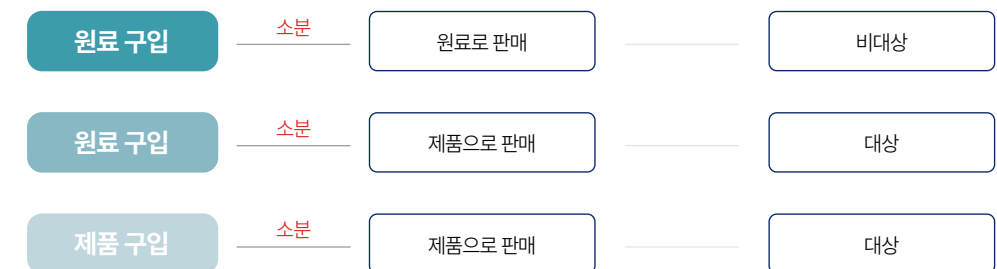
< OEM 및 ODM 제품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

Q1-1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단순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탈취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조시설이 없기에 신고번호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 작은 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성분 변화 없이 소분만 하여 판매할 경우에도 안전확인신고 대상인가요?

A. 단순 소분도 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다.

세탁세제, 섬유유연제를 제외한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분하여 판매하는 자가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에 따른 확인 및 신고의 주체가 되므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신고완료한 제품만을 소분하는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의 경우에만 소분 제품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1-1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대상여부 FAQ

제품	사용방법	대상여부	근거	품목
전문가용/산업용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 에서 전문 작업자가 사용하거나 산업체에서 사용	대상	전문가용, 산업용 제품이지만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 는 작업공간에서 사용되는 경우 일상적인 생활공간으 로 봄	공통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제한된 공간에서 전문 작업자가 사용하거나 산업체에서 사용	비대상	전문가용, 산업용 제품이지만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 지 않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경우 일상적인 생활 공간으로 보지 않음 * 단,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 등을 통하여 제품 을 구매할 수 없어야 함	-
오븐, 식기세척기 세정제	오븐, 식기세척기의 외부 표면을 닦음	대상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을 세정하는 것은 세정제 적용범위에 포함됨	세정제
	오븐, 식기세척기의 내부를 닦음	비대상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더라도 식기세척기 내 부 세척시 세정제가 인체에 직접 노출될 수 있음	-
의료용 세정제 (내시경세정제, 시신용 세정제)	병원에서 내시경 시술 후 내시경 내부의 단백질 등 이물 제거 및 세 척하도록 고안된 세정제	비대상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아닌 병원 내 의료행위 등과 관련 되어 사용되는 세정제는 세정제 적용범위 제외대상에 해당	-
	장외사가 사망자의 시신을 닦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세정티슈	비대상	인체에 직접 부착 또는 삽입, 접촉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세정제 적용범위 제외대상에 포함됨	-
전기면도기용 세정제	전기면도기의 칼날 부분을 세정	비대상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을 위한 전용 세정제에 해당	-
속눈썹 접착제	신체부위에 속눈썹 대용물을 부착 하거나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사 용하는 미용접착제	대상	미용 혹은 분장을 목적으로 신체부위에 속눈썹 대용물 을 부착하거나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사용됨	미용접착제
	숙련된 속눈썹 연장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미용접착제		불특정다수(속눈썹 연장 손님 등)의 출입이 가능한 일 반 가게에서 사용하거나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소비자 들이 구매할 수 있음	
	속눈썹을 펴/연장/강화하기 위하 여 인체에 도포하는 속눈썹용 펴 글루/연장제/강화제	비대상	접착 용도의 제품이 아님	-
	가속눈썹을 제거 시 사용하는 가 속눈썹 제거 리무버		접착 용도의 제품이 아니며, 현재 제거제의 경우 해당 하는 용도가 없음	
네일아트 접착제	손톱에 인조손톱을 부착하기 위 해 사용	대상	미용 혹은 분장을 목적으로 신체부위에 손톱 대용물을 부착하는 용도는 미용접착제임	미용접착제
	인조손톱을 만들기위해 모양틀 에 접착젤을 넣고 굳힌 후 모양틀 을 제거함	비대상	접착젤 자체가 인조손톱이 되는 제품으로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방충망보수 테이 프, 벌레트랩 끈끈 이 테이프	방충망의 찢어진부분에 덧대어 사용하거나 양면테이프를 사용 하여 벌레를 퇴치함	비대상	테이프 형태의 접착제는 접착제 적용범위 제외대상임	-
반려동물용 방향제, 탈취제	동물의 집, 쿠션 등의 냄새를 좋 게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향제, 탈 취제	대상	공간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좋은 향을 나게 하거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집, 쿠션등 동 물용품에 사용하는 제품	방향제, 탈취제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향을 첨가 하여 반려 동물의 생활공간에 뿌 리는 방향제, 행동 교정제 등	비대상	반려동물을 위해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타법 관리범위에 해당됨	-

제품	사용방법	대상여부	근거	품목
팔찌형 방향제	향이 나는 고체방향제를 팔찌로 만들어 차고다니며 향기를 맡음	비대상	패치·목걸이형 등 인체에 착용하거나 의류에 부착하는 제품은 방향제 적용범위 제외대상임	-
룸스프레이 향수	실내공간은 물론 몸에도 뿌려 사용	대상	실내공간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대상 방향제에 해당. 다만, 동일한 제품으로 타법(화장품법 등) 관리범위에 해당하는 다용도 제품인 경우에는 각 법의 기준 모두 준수 필요	방향제
		비대상	몸에 뿌리는 용도는 타법(화장품법 등 확인 필요)의 관 리 범위이므로 해당 법의 기준 준수 필요	-
프라이팬 및 인덕션 세정제	프라이팬의 찌든 때(위생용품 2종 세척제) 및 인덕션 세정제	대상	인덕션 세정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 세정제에 해당. 다만, 동일한 제품으로 타법 관리범위도 해당하는 다용도 제품인 경우에는 각 법의 기준 모두 준 수 필요	세정제
		비대상	프라이팬의 찌든때용은 타법(위생용품관리법 등)의 관 리 범위이므로 해당 법의 기준 준수 필요	-
항균처리된 공기청 정기, 에어컨, 자동 차에어컨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가정, 자동차 등 실내에서 공기청 정기 및 에어컨 장치에 장착된 필 터 자체의 항균·멸균·살균·보존 등을 위하여 필터의 표면 또는 내 부에 살생물물질 사용	대상	필터형보존처리제품 적용기준에 해당됨.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제품 내 화학물질 방출량 기준물질을 사용하여 야 하며, 화학제품안전법 12조, 18조에 따라 섬유·가죽 류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기존살생물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 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의 방출량 이하인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	필터형 보존 처리 제품
	공조용 필터, 수질정화용 필터에 살생물물질 사용	비대상	건물 내 공조용 필터, 수질정화용 필터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염방지시트	세탁시 이염방지시트를 넣고 사 용하여 옷감 등의 이염을 방지	비대상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표백제 등의 기능이 전혀 없으며 그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세탁시 발생할 수 있는 이염 방지에 대한 기능만을 광고할 경우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송장지우개	택배 송장에 도포하면 개인정보 가 인쇄된 감열성분을 녹여 송장 정보를 지움	비대상	송장의 감열성분을 녹여 정보를 지우는 원리의 제품으 로, 이는 화학제품안전법 및 고시에 따른 신고대상 생 활화학제품에 포함되지 않음	-
잉크패드	스펀지에 잉크가 묻어있는 잉크 패드에 도장 등을 찍어 사용	비대상	인주의 적용범위 제외대상으로, 스펀지에 잉크를 넣거 나 함침시켜 사용하는 스탬프 잉크는 대상이 아님	-
잉크스탬프	잉크 패드가 내장되어있어 스탬 프를 눌러 도장을 찍음			
불꽃 색 첨가제	모닥불에 넣으면 불꽃이 여러 가 지 색상으로 변함	비대상	불꽃에 제품을 뿌려 색을 변경하는 방식의 물질로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페인트	가구, 인테리어 소품, 타이어휠 등에 칠하여 외관을 꾸밈	비대상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료는 물체도색제 적용범위 제외대상에 해당됨. 단, 물체 표면에 색을 입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물체도색제 에 적용될 수 있음	-
에폭시 리페어 용품	서핑보드 등 서핑용 제품의 부분적 인 파손을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	비대상	서핑용 제품의 파손 등을 수리하기 위한 공간을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 보지 않음	-

2. 파생 신고



관련 조항 및 참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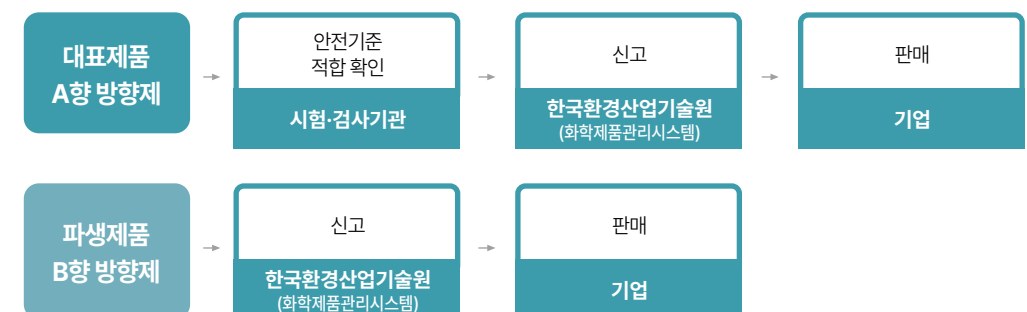
- 제2조(정의), 제5조(안전기준)
-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 [별표 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 [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Q2-1. 다양한 향의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향이 바뀔 때마다 시험·검사를 다시 해야 하나요?

저는 실내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퓨저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1인 소상공인입니다. 라벤더 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마치고 안전기준 확인 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고 반응이 좋아 이번에는 유칼립투스 향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확인·신고를 진행하고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향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향이 다른 제품을 만들 때마다 시험·검사를 진행하려니 비용이 부담됩니다.

A. 대표제품 신고 후 향이 다른 제품은 파생제품으로 신고하세요.

한 개의 제품을 대표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를 진행한 경우, 파생제품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향이 다른 제품은 모두 파생제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파생제품이란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합니다. 파생제품은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의 확인·신고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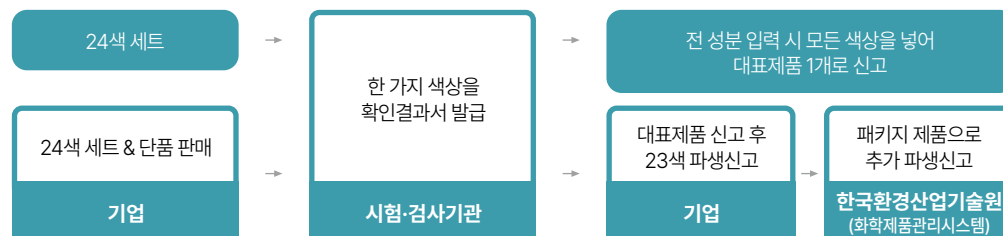
Q2-2. 24색의 염색제 세트를 판매할 때, 세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색에 대해서 모두 확인·신고 해야 하나요?

저는 에코백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에코백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24색 염색제 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문의가 들어와 판매하려고 알아보니 의류나 섬유용 염색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마친 후 판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24개의 색상으로 구성된 염색제인데 색을 제외한 성분이 동일한 경우에도 모든 색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나요?

A. 판매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세요.

24색의 염색제를 세트로만 판매하는 경우는 한 가지 색상의 제품을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결과서를 받은 후 나머지 색상들은 안전기준 물질의 변경이 없는 경우 화학제품관리 시스템에 일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24색의 염색제를 세트로도 판매하면서 단품으로도 판매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색상의 제품을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결과서를 받은 후 대표제품으로 신고, 나머지 색상들은 안전기준 물질의 변경이 없는 경우 각각 파생제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트 제품은 파생신고 시 '패키지 적용'을 활용하여 세트 제품으로 신고하셔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Q2-3. 석고방향제 리필오일은 안전기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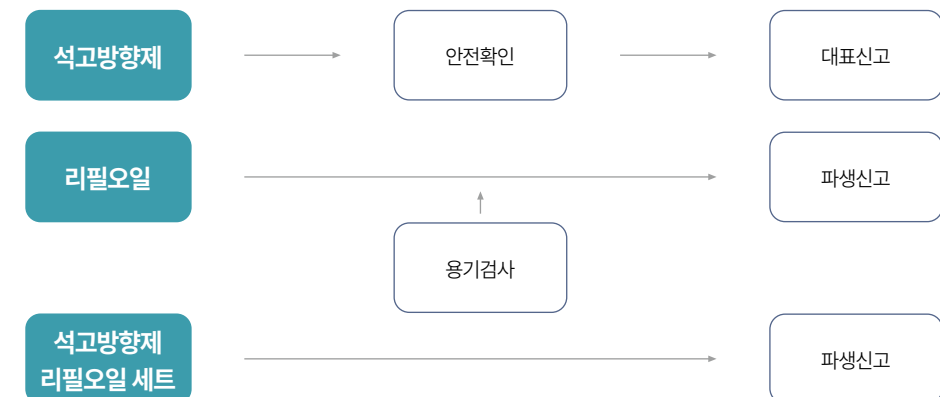
저는 석고방향제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석고방향제의 향이 약해지면 소비자가 향료를 첨가할 수 있도록 리필오일을 동봉하여 세트로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석고방향제와 리필오일 두 가지 모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석고방향제와 리필오일은 파생신고 가능합니다.

석고방향제 리필오일은 석고방향제를 대표제품으로 신고 후 리필오일의 제형을 보충형(함침물형)으로 하여 파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또는, 리필오일을 대표제품으로 신고 후 석고방향제(함침물형)를 파생제품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때 파생제품은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제형 동일하며 안전기준 물질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석고방향제가 대표제품이라면, 리필오일의 용기를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서 용기시험을 진행한 후 리필오일을 파생제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석고방향제와 리필오일을 동봉하여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트제품을 파생제품으로 신고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Q2-4. 사용시에 제거되는 장식재가 변경될 때도 파생신고 대상인가요?

캔들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캔들 제품마다 소재와 디자인이 다른 띠지를 돌려 판매할 예정입니다. 제품에 사용한 장식재도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전성분으로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띠지에 대한 정보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띠지가 바뀔 때마다 파생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제거하고 사용하는 장식재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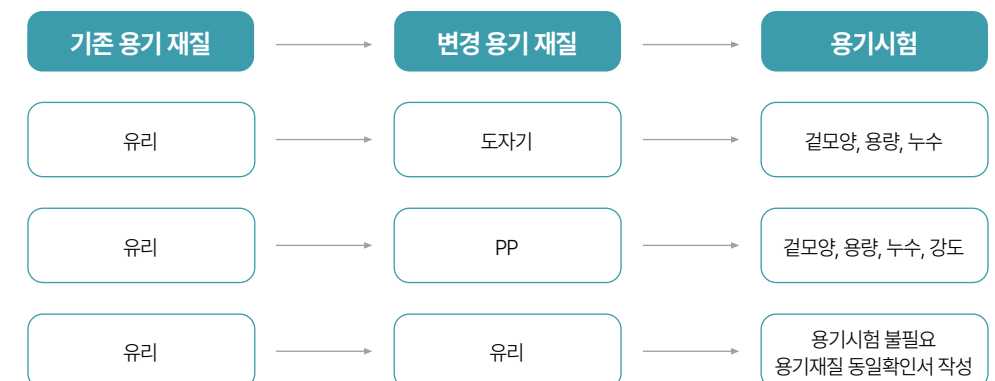
초에 색소가 전사(프린팅)되어있어 함께 연소되거나 함침되어있는 장식재는 배합비 0%로 전성분에 기재해야 하나, 사용 시 제거되는 장식재는 전성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띠지는 초 발화 시 제거하고 사용하므로 띠지의 소재나 디자인이 달라지는 경우 파생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2-5. 제품의 용기가 유리에서 도자기로 바뀔 때 용기시험이 필요한가요?

방향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유리용기에 담긴 디퓨저를 대표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분은 동일하지만 용기를 유리에서 도자기로 변경해 제품을 리뉴얼할 예정입니다. 기존 유리용기 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을 때 깨질 위험이 있는 용이기 때문에 용기강도 시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자기도 마찬가지로 강도 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용기인데요. 그럼 유리에서 도자기로 재질이 변경되어도 별도의 용기시험 없이 변경신고를 진행해도 되나요?

A. 용기 재질이 달라지면 용기적합 시험검사 대상입니다.

유리 용기는 용기 강도의 안전기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겉모양, 용기누수, 중량 및 용량의 안전기준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용기시험검사 대상입니다. 유리를 도자기로 변경하는 경우 용기의 재질이 변경되기 때문에 용기시험검사를 진행하여 변경신고 진행이 필요합니다.



Q2-6. 석고방향제에 채색을 하면 사용하는 색상마다 파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방향제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고방향제를 만든 후 여러 색의 물감으로 제품 겉면에 채색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한 모든 물감에 대해서 파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채색은 극소량이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품 겉면에 채색하는 경우, 그 양은 극소량이므로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단, 방향제, 초에 한하여 색소를 함침하는 경우 또는 색소를 직접 전사하는 경우는 한가지 색소에 대해 안전기준적합확인을 진행하고 사용가능한 모든 색상을 배합비 0% 로 전성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품 겉면 채색	제품 내 함침
예시	제품 겉면에 물감 채색	제품 제조 시 염료를 함께 배합 제품 겉면에 사진 전사
염료 신고 여부	미신고	신고

3. 변경 신고



관련 조항 및 참고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제2조(정의), 제5조(안전기준)
 - [별표 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Q3-1. 용기 재질과 용량이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요.

디퓨저를 판매하고 있는 초보 창업자입니다. 투명한 유리 용기로 된 디퓨저를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방향제로 확인·신고를 모두 마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은 동일하지만 분위기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 불투명한 유리 용기와 용기가 깨질 위험성이 있어 플라스틱 용기로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A. 용기와 용량이 변경된 제품은 변경신고 하세요.

대표제품의 용기와 용량이 변경될 경우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대표제품은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제품의 용기가 플라스틱 등으로 재질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에 용기시험을 의뢰하여 변경된 용기의 '겉모양, 용기강도, 용기누수, 중량/용량/매수/크기' 시험을 하고, 만약 용기 재질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 용기 재질 확인서'로 갈음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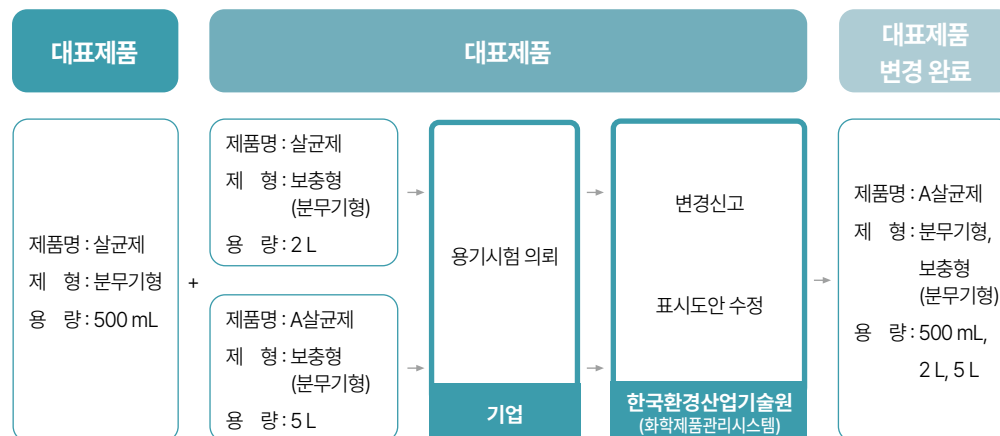
<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의 확인·신고 절차 >

Q3-2. 다른 용기에 덜어서 쓸 수 있는 보충형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아염소산수를 제조하여 살균제를 분무기형으로 신고한 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대용량 제품을 요청하는 구매자들이 많아져서 분무기 용기에 덜어서 쓸 수 있도록 2L, 5L 용량의 액체형 제품을 추가하여 동일한 제품명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표제품으로 신고한 제형은 분무기형 제품으로, 이와 별도로 보충형인 액체형(2L, 5L)을 판매하고자 할 때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 보충형(분무기형)으로 시험·검사기관에 용기검사를 진행한 후 변경신고 하세요.

보충형의 경우, 원제품의 제형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원제품이라고 함은 보충형 제품을 넣어서 쓰는 원래 제품을 의미합니다. 보충형 제품의 용기가 대표제품과 변경되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에 용기시험을 의뢰하여 변경된 용기의 '겉모양, 용기강도, 용기누수, 중량/용량/매수/크기' 시험을 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변경신고 시 보충형 제품의 제형은 보충형(분무기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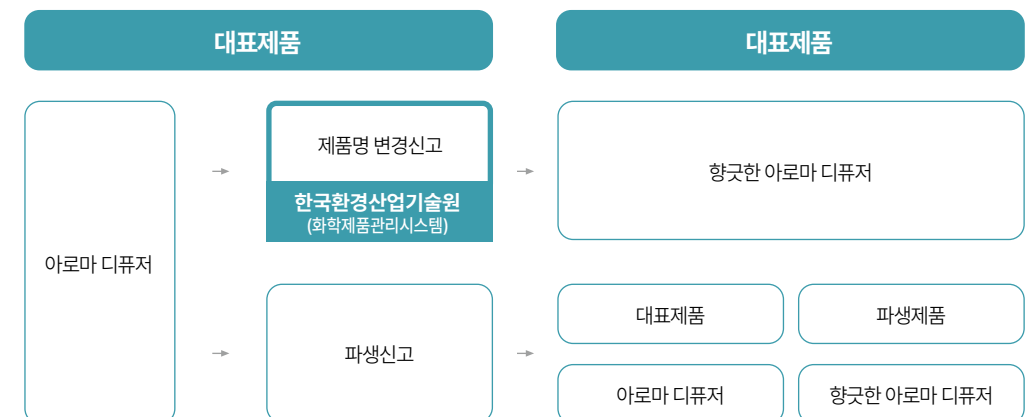
< 보충형 제품의 신고 절차 >

Q3-3. 이미 신고한 제품의 제품명을 다르게 판매하고 싶어요.

저희는 방향제, 초 제작 교육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공방입니다. 방향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아로마 디퓨저'라는 제품명으로 방향제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향긋한 아로마 디퓨저'로 제품명만 바뀌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미 신고한 대표제품과 성분 및 배합비가 같고 제품명만 다른 제품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제품명을 변경할 경우 대표변경 신고 또는 파생제품으로 신고해 주세요.

제품명을 달리하여 판매하고 싶은 경우 대표제품 변경신고를 하거나, 두 가지 제품명을 모두 사용하려면 파생제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대표제품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대표제품명의 제품은 변경 이후부터 제조·수입·판매 하지 못합니다.



< 제품명 변경 시 신고 절차 >

Q3-4. 사업장 정보가 변경되어 대표제품을 변경신고 하였습니다. 파생제품도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인쇄용 잉크·토너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을 신고하여 판매하였으나, 물류창고가 부족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사업장을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대표제품을 변경신고 하였습니만, 동일한 신고번호로 판매중인 파생제품이 15개 제품이 있습니다. 파생제품도 각각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사업장 정보 변경인 경우, 대표제품 변경으로 파생제품의 변경을 갈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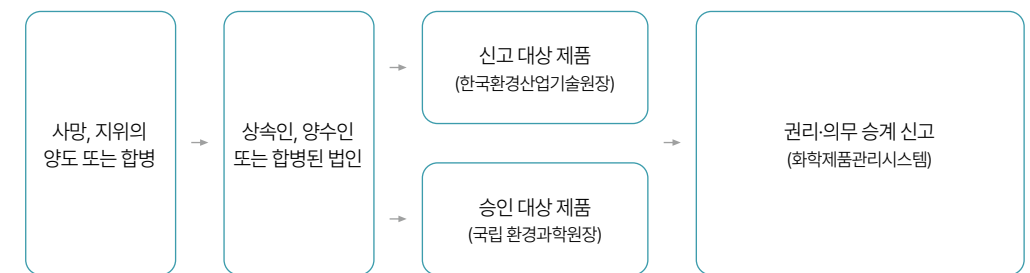
사업장 소재지나 전화번호 등의 신고인 정보 또는 분류품목, 용도, 제형, 어린이보호포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표제품의 변경으로 기존 파생제품의 변경을 갈음합니다. 또한, 대표제품의 변경신고 완료일 이후에 제조/수입하는 기존 파생제품에는 변경된 정보를 표기해주셔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신 경우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Q3-5. 지인의 회사와 합병하였습니다. 기존에 신고를 완료한 제품을 합병된 회사 명의로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퓨저 공방을 운영하는 지인과 함께 이번에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향초 & 디퓨저 공방으로 합병하였습니다. 서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자등록증은 폐지할 예정이며, 새로운 사업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한 향초와 디퓨저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시 안전기준적합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A. 권리·의무 승계 통보서를 활용하세요.

화학제품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또는 합병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7호서식] 권리·의무 승계통보서를 작성하시어, 신고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승인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시어, 기존에 신고 또는 승인된 제품을 승계를 받으신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기존업체 폐업절차 이전에 권리·의무 승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권리·의무 승계 절차 >

4. 갱신신고



관련 조항 및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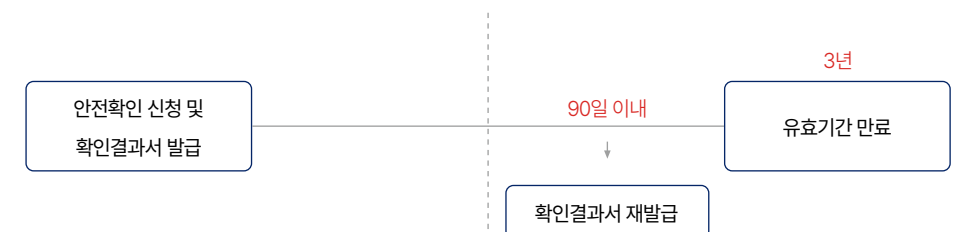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제2조(정의), 제5조(안전기준)

Q4-1. 갱신을 위한 시험검사는 언제까지 다시 받아야 하나요?

코팅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19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았고 확인 결과서의 유효기간이 2022년에 만료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새롭게 안전기준 시험을 받으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시험검사를 받아야 갱신을 할 수 있나요?

A. 갱신 시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 이내에 적합 확인결과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대표제품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 종료일 9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새로운 안전기준 적합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아야 갱신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이 되는 날보다 빠르게 확인결과서 발급을 받거나,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확인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갱신이 아닌 신규로 신고해야 합니다.



Q4-2. 갱신을 위한 시험검사는 기존 대표제품과 반드시 같은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해야 하나요?

세정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2019년에 A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표제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와서 다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A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B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아도 갱신이 가능한가요?

A. 갱신 시에는 기존 대표제품과 동일한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르면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 따라 신고번호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갱신은 기존 대표제품과 동일한 신고번호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같은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험검사기관이 바뀌면 갱신이 아닌 새로운 대표제품으로 신고하여 신규 신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4-3. 기존 대표제품과 안전기준 물질이 달라진 경우에 갱신 신고 가능한가요?

방향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제품에 사용하는 착향제는 향료 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제품에 사용하는 향료가 리뉴얼 될 예정인데 기존 향료와 비교했을 때 보존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리뉴얼 전 향료로 제조한 기존 제품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고소진 할 계획이어서 갱신제품부터 보존제가 추가된 향료로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보존제는 방향제 안전기준물질에 해당되는 성분으로 확인했는데 기존 대표제품과 안전기준 물질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갱신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안전기준물질이 달라지는 경우는 갱신신고가 불가합니다.

기존 대표제품과 비교했을 때 안전기준물질(사용물질, 보존제, 사용가능 주성분 등)이 달라지는 경우는 갱신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제품으로 신고하여 신규 신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4-4. 유효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갱신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캔들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을 착각해서 안전확인 시험 접수를 늦게 했더니 유효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확인결과서를 받았습니다. 신고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발급될텐데 갱신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A. 대표제품 확인결과서 확인완료일로부터 30일 까지 갱신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갱신은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제품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확인완료일로부터 30일(영업일기준) 까지는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Q4-5. 파생제품 갱신신고는 언제해야 하나요?

방향제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제품의 확인결과서를 받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대표제품 갱신 신고를 진행중입니다. 파생제품의 갱신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대표제품 갱신 신고 완료 이후 대표제품 확인결과서 확인완료일로부터 30일까지 파생신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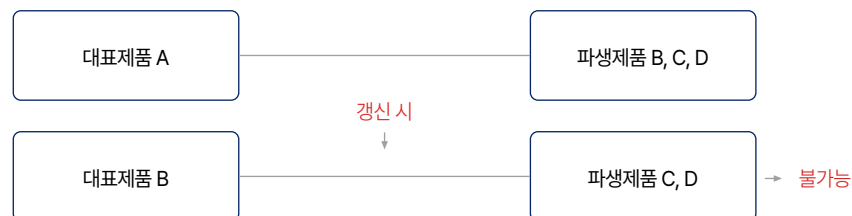
파생제품의 갱신 신고는 대표제품 갱신신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파생제품은 대표제품의 확인결과서로 같음하기 때문에 대표제품 확인결과서의 확인완료일로부터 30일까지 갱신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Q4-6. 기존에 신고했던 대표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파생제품을 대표로 갱신 접수가 가능한가요?

코팅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기존 A제품을 대표제품으로 신고하여 판매하였으나 원료 수급의 문제로 생산이 중단되어 앞으로 판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생제품인 B제품, C제품, D제품은 유효기간 만료일 후에도 제조·판매 예정입니다. 파생제품만이라도 갱신신고를 하고싶은데 B제품을 대표제품으로 갱신 접수가 가능한가요?

A. 갱신 시 대표제품은 변동될 수 없습니다.

갱신시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의 혼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갱신은 대표제품의 갱신이므로 대표제품은 변동될 수 없습니다.



5. 표시기준



관련 조항 및 참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제6조(표시기준)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부록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도안 예시

Q5-1. 제품 겉면이 작아 표시 문구를 다 넣을 수 없어요.

섬유 탈취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탈취제 제품이 작아서 제품 겉면에 표시 사항 내용을 전부 넣을 수 없었습니다. 탈취 성능이 뛰어나다는 제품의 특징을 살린 홍보 문구와 표시사항 내용 중 중요하다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만 기재하여 표시도안 제작 후 부착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환경부로부터 표시기준 위반으로 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표시기준 상의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판매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품이 작아서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품 겉면적에 따른 필수 표시사항만 기재하세요.

제품의 표시면적이 충분할 경우(표시면적 100 cm² 초과) 안전·표시기준[별표5]에 해당되는 모든 표시사항은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겉면이 작아(표시면적 100 cm² 이하) 해당되는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표시기준 [별표6]에 따라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 후 제품에 동봉해야 합니다.

표시면의 면적	표시사항
50 cm ² ~ 100 cm ²	· 품목 · 제품명 · 제조자,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수입자,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 그림문자 · 주요물질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 ·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 · 안전기준확인 마크
50 cm ² 미만	· 품목 · 제품명 ·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

Q5-2. 식물추출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향오일을 수입하여 판매할 때, “자연친화적”이라는 광고를 해도 되나요?

식물추출물로 만든 천연 향오일을 방향제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천연 향오일이라서 화학물질로 제조된 향들과는 달리 인체에 무해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자연친화적인 향으로 제품에 광고를 하고 싶은데,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문구들은 광고 금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문구들을 광고에 사용하면 안 되나요?

A.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오해를 줄 수 있는 문구는 표시할 수 없어요.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및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문구는 제품에 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친환경 마크(환경표지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무독성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독성 없음 (Non-Toxic, Toxic zero)
환경·자연 친화적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천연 ¹⁾ ,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추출 ²⁾ , 순수(Pure), 순(純) ³⁾
무해성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인체·동물 친화적	인체·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이와 유사한 표현	1) 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 제외 2) 자연에서 유래·추출한 물질명·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외 3) 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Q5-3. 수입 제품에 해외에서 획득한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경우 마크를 활용하여 광고 해도 되나요?

해외에서 제조된 세탁세제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탁세제의 완제품 샘플을 받아보니 제조국에서 취득한 비건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제조한 제품이라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없는데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사용 가능하다면 이 마크를 활용하여 홍보해도 되나요?

A. 그대로 사용해도 되며, 실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제조된 완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해당 마크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며, 광고는 실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국내에서 인정받은 친환경 제품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합니다.

Q5-4. 향초의 모양 때문에 표시사항을 붙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향제와 초를 제작하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향초를 만들고 있는데 초의 굴곡진 모양과 왁스 성분으로 표시사항을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해야 할까요?

A. 제품 포장의 표시면, 첨부문서 또는 라벨, 꼬리표 등을 사용하세요.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에 따라 1) 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제품의 경우, 2) 제품 겉면에 부착된 라벨이 연소 등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포장의 표시면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할 수 있으며, 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등을 사용하여 표시면 이외에 표시하거나 부착할 수 있습니다.



Q5-5. 자동차 실내·외 겸용으로 사용되는 세정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필수문구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품별 필수 표시사항에서 '제품의 용도가 자동차 외부용인 경우'에는 "자동차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필수로 넣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실내용, 외부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세정제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용으로 실내용과 외부용의 용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A. 자동차용(실내용, 외부용)으로 확인 및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자동차 실내에서 사용하지 마시오'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의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내용 중 '제품 특성상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가 해당제품에 적용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5-6. 표시도안에서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작성 시 기타물질에는 어떤 성분을 기재해야 하나요?

탈취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제조하는 탈취제에는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된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추출물은 제품의 최대함량 물질도 아니고 탈취 기능을 하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물질이 아닌 기타물질로 표시하여 신고를 했는데 기타물질에서 제외하라는 수정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타물질은 어떤 성분에 대해 기재할 수 있는 건가요?

A. 기타물질에는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살생물질, 나노물질, 문신용 염료에 사용된 모든 물질만을 표시합니다.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형광증백제와 마찬가지로 기타물질도 해당 물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질이 산도조절제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기능을 부가하여 [기타물질 : 황산(산도조절제)] 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중 하나에서 이미 표시된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타물질 구분	관련 법률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10호
중점관리물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10호의2
살생물질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7호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2항제3호
문신용 염료에 사용된 모든 물질	-

Q5-7. 제조연월은 1차포장과 2차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나요?

방향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1차포장(제품)과 2차포장(외포장), 3차포장(상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차, 3차 포장에는 표시도안이 인쇄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조연월을 별도표기로 기재하고자 합니다. 1차포장의 표시도안에 제조연월이 표기되었다면 2차와 3차 포장에는 제조연월을 별도표시로 표시해도 되나요?

A. 1차 포장에 제조연월이 표시되어 있다면 2차, 3차 포장에는 제조연월 별도표기로 표시 가능합니다.

1차포장의 표시도안에 제조연월이 "연.월"의 형태로 적혀있다면, 2차와 3차 포장에는 "별도표기"로 표시 가능합니다. 제조연월은 "〇〇년〇〇월", "〇〇〇〇년〇〇월", "〇〇.〇〇.(연.월.)", "〇〇〇〇.〇〇.(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5-8. 용량을 범위로 신고하는 경우 표시도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디퓨저를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여러 가지 용량을 판매 할 예정이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범위로 용량을 입력했습니다. 이 경우 판매하는 모든 용량에 대한 표시도안 견본사진을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용량을 범위로 입력하는 경우 견본사진은 견본제품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신고합니다.

제품 용량을 범위로 신고하는 경우 표시도안은 대/중/소 모두 작성하여 첨부하며, 견본사진은 표시도안의 용량 부분에 견본제품의 용량을 적고 해당제품 표시면적에 따른 표시도안을 부착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견본에 중/소 표시도안 사용 시 표시도안 대에 해당하는 첨부문서는 필수입니다.

제품 용량	신고 용량	표시 도안	견본 사진
50 mL	10~100 mL	대/중/소 첨부	 표시도안 중형 / 첨부용 표시도안 대형 50mL
	10, 50, 100 mL	대/중/소 첨부	 표시도안 소형 첨부용 표시도안 대형 10mL 표시도안 중형 첨부용 표시도안 대형 50mL 표시도안 대형 100mL

6. 어린이보호포장



관련 조항 및 참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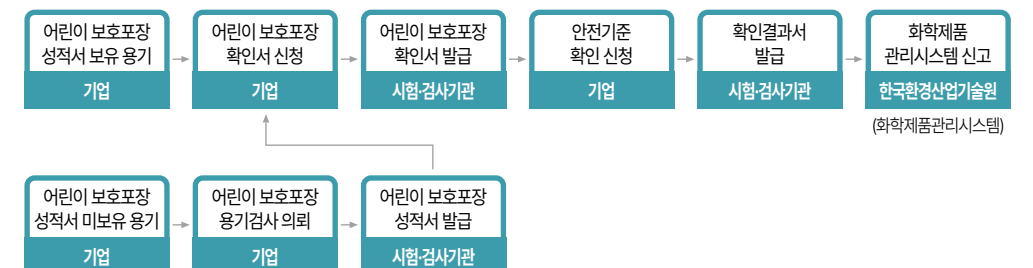
- 제6조(표시기준)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부록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도안 예시

Q6-1. 저의 제품이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래요.

세정제를 판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생활화학제품으로 확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의뢰하였더니 제품의 pH가 11.5 이상인 액상제품이고, 40°C에서 동점도 20.5 mm²/s 이하로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보호포장 관련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확인·신고 전에 시험·검사기관에서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을 발급 받으세요.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는 ①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②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은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와 어린이보호포장 성적서 등 해당 증빙서류를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발급받은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면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시 성적서 등 해당 증빙서류가 없을 시에는 우선 어린이보호포장 검사를 진행하여 성적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6-2. 캡슐형 세탁세제가 어린이보호포장에 포함되었대요.

캡슐형 세탁세제를 수입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2019년도에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신고 당시에는 대상 품목이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필수품목이 아니어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했습니다.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추가로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2020년부터 캡슐형 세탁세제도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예전에 신고한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캡슐형 세탁세제는 어린이보호포장 필수적용 품목입니다.

캡슐형 세탁세제는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필수 품목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어린이보호포장이 필수로 적용되며,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여부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 다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수품목	적용물질기준		물질(액상제품, 총합 10 % 이상, 40°C에서 동점도 20.5 mm²/s 이하)	적용 물질기준에 대한 적용 제외 기준
	물질	함량		
액체형 자동차형 워셔액	에틸렌글리콜	10% 이상	C3~C13 직쇄형 1차 알코올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된 물질)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
액체형 자동차형 부동액	메탄올	3% 이상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순간접착제 (순간 접착력이 있는 미용접착제 포함)	디클로로메탄	1% 이상	이소부틸 알코올 (isobutyl alcohol)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1,2-디클로로에탄	10%이상	테르펜 알코올 (terpene alcohol)	개봉 후 내용물질 직접 노출되지 않은 용기
캡슐형 세탁제품	살리실산메틸	5% 이상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실제 중량 15kg 이상 제품
	NaOH or KOH	2% 이상 (NaOH로서)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메타크릴산	5% 이상	pH(액체제품)	
	개미산	5% 이상		2.0 이하 또는 11.5 이상, 20.5 mm²/s 이하
	차아염소산염	2% 이상		
	과산화수소	5% 이상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모든농도		
	모르폴린	5% 이상		
	아세토니트릴	500mg 이상		

Q6-3.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대표제품의 파생제품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어야 하나요?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가 절감을 위해 파생제품에는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을 제외하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 후 제품을 판매하면 될까요?

A.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이 되지 않는 제품을 제조하였다면 파생제품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파생제품은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안전기준(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포함)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하므로, 물질의 변경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여부가 달라졌다면 파생제품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제품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중 물질의 변경이 있어도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여부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파생제품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제품별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여부		제품 B의 파생제품 가능 유무
대표제품 A	제품 B	
적용	적용	가능
비적용	비적용	가능
적용	비적용	불가능
비적용	적용	불가능

Q6-4. 가정에서 보관하지 않는 전문가용 제품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가요?

코팅제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기준 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가정용으로는 판매되지 않고 전문가용으로 카센터에만 납품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판매 등을 하지 않고, 카센터에 직접 납품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저희 제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인가요?

A. 가정용 이외의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주표시면에 “가정용 제품이 아님” 또는 특정 사용처(예, 카센터용 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표시 해야 하며,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7. 수입·통관



관련 조항 및 참고

- ✓ 환경부예규 제68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 ✓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Q7-1. 제품을 수입해야 하는데 통관이 거절 되었어요.

광택 코팅제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수입자입니다. 제가 판매하는 제품은 2018년에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를 받아 종전 법에 따른 표시사항 및 위해우려제품 검사성적서로 통관 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일한 제품을 새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물건을 들여왔는데, 관세청으로부터 위해우려제품 성적서만으로는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수입요건확인번호를 신청하세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를 받아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제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수입요건확인번호'를 신청하시고, 수입요건확인번호를 발급받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요건확인번호는 신청일로부터 통상 접수일 기준 3일 이내(다만, 공휴일 또는 수정보완요청 기간 제외)에 발급됩니다. 단, 발급받은 수입요건확인번호의 유효기간은 위해우려제품 검사성적서 상의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me.go.kr

전자민원 선택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

신청제품 선택 후 수입요건
확인번호 정보 작성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 방법 >

Q7-2. 시험·검사를 위한 샘플을 수입 통관하는 경우에도 수입요건확인번호가 필요한가요?

세정제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시 시험·검사에 필요한 샘플만 먼저 받아보려고 합니다.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샘플을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도 수입요건확인번호가 있어야만 하나요?

A.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샘플은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면제확인 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확인 신청을 위해서는 제품에 “연구용”, “견본”, “비매품” 등 문구가 부착되어 있어야하고 시험·검사 용도 등 샘플에 대한 사용계획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 화학제품안전법 관계 조항에 따른 확인·신고,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 ✓ 기업,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실험·개발용으로 사용
- ✓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품
- ✓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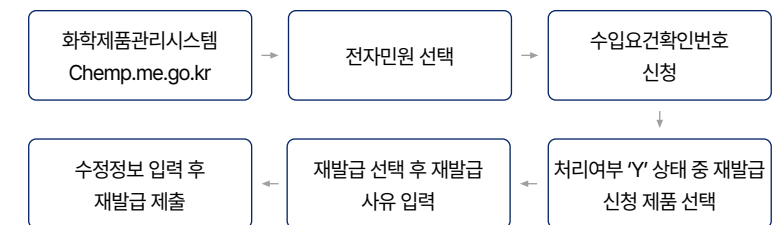
< 면제확인 신청 사유 >

Q7-3. 수입요건확인번호를 받은 제품의 수입량 등을 변경하고 싶어요.

차량용 방향제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수입요건확인번호를 받아서 수입하고 있는데 소비자들 반응이 좋아서 최초 신고한 수입량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신고한 수입량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수입요건확인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주세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하신 후 재발급을 신청하여 변경 사유와 원하는 수량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수입요건확인번호의 변경은 접수일 기준 3일 이내(단, 공휴일 또는 수정보완요청 기간 제외)에 발급되오니, 시스템에서 신청처리 여부를 확인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입요건확인번호 통관잔량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해당 수입요건확인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 수입요건확인번호 재발급 신청 방법 >

**Q7-4.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위해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입
요건확인번호를 먼저 신청 할 수 있나요?**

어항에 사용하는 살조제를 수입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획득하고자 시험·검사기관에서 살조제 품목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을 단축하고자, 확인결과
서가 발행되기 전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수입요건확인번호를 먼저 신청 할 수 있
는지 문의드립니다.

A.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완료 후 수입요건확인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요건확인번호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신고증명서(신고대상제품) 또는
승인통지서(승인대상제품) 발급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즉,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완료 후,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승인
완료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7-5.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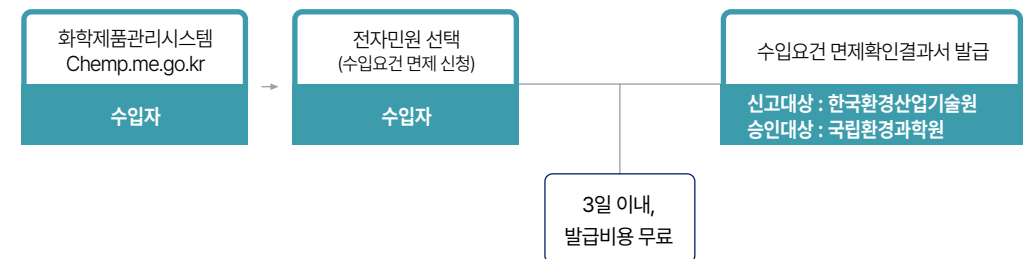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수입요건확인 면제 제도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면제 대상이 되며, 신청 절차와 신청 후
소요기간 및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 신청 절차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면제확인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면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 대상인 경우 신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일 기준 3일
이내 처리(단, 공휴일 또는 수정보완요청 기간 제외)되며, 수입요건 면제확인결과서 발
급에는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

1. 과학적 실험용·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위 (1~3)번 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수입요건확인 면제 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

8. 효과·효능 표시·광고



관련 조항 및 참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제6조(표시기준)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 [별지 제10호 서식]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
- [별지 제11호 서식] 제품의 효과·효능 변경 신청서

Q8-1. 세탁세제에 '찌든 때 제거 99 %'도 효과·효능 입증 자료 제출 대상인가요?

2018년도부터 세탁세제를 직접 제조해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까지 완료하여 판매 중입니다. 효과·효능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내용을 확인 중 저희가 현재 '찌든 때 제거 99 %'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도 효과·효능의 입증자료 제출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세탁세제에 대한 세탁의 효과·효능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절차는 제품 내 살생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예, 살균, 소독 등)을 표시·광고하는 신고대상 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및 제품(표시·광고하려는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탁의 효과·효능(세탁력) 관련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나, 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Q8-2. 살균제 제품의 표시사항에 “살균”, “항균”이라는 단어만 기재하려고 합니다. 효과·효능 관련 시험을 진행해야 하나요?

이번에 제품을 개발하면서 탈취도 되면서 살균, 항균도 되는 다품목 제품을 개발하여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디자인팀에서 표시사항에 “살균”, “항균”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효과·효능 관련 시험을 진행해야 하나요?

A. “살균”, “항균” 등 효과에 대한 단순 표시도 효과·효능 관리대상에 해당합니다.

효과·효능의 표시·광고를 위해서는 관리 절차 준수를 위하여 제품의 살균, 항균에 대한 성적서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에 따라 ‘대장균 (*Escherichia coli*) 99.9 % 살균’ 등 입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Q8-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시험·검사 기관에서 받은 효과·효능시험성적서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

효소를 활용하여 살균 효과를 가지는 살균제를 개발하여 현재 특허를 획득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품목으로 확인·신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은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살균력에 대해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국내 모 대학교에서 이미 10종 균에 대한 살균력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균력에 대한 시험도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서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A. 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시험·검사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물적 능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① 개별법에 근거 및 설립된 시험기관, ②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③ 국내·외 대학 또는 관련 전문시험기관에서 받은 효과·효능 시험성적서는 전부 인정됩니다.

Q8-4. 효과·효능에 대한 입증자료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A) 균을 활용해서 살균을 할 수 있는 살균제를 5년여 전부터 개발하여 특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기 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 효과·효능에 대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품을 개발 당시 (A) 균을 실험할 수 있는 대학교에 살균력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성적서가 5년 전에 발행된 자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A. 제품의 원료와 성분 및 배합비가 변경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품의 원료와 성분 및 배합비가 동일한 경우, 제품의 입증자료는 유효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Q8-5. 효과·효능 시험 성적서는 가지고 있는데 효과·효능 광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살조제를 이미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 완료 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품의 홍보를 위해 효과·효능에 대한 시험·검사도 진행하여 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시 [별지 제10호 서식]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와 입증자료(인증서, 성적서 등)를 포함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1년 7월 1일 이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전 신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

Q8-6. 신고 완료 후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대장균(99.99 %), 녹농균(99.99 %), 황색포도상구균(99.9 %)의 효과·효능에 대해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 제품에 대하여 표시와 광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A. 신고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증명서(확인서 내 효과·효능 정보)에 기재된 '표적생물체(균주보관기관 및 균주번호(생략가능)), 표적생물체 감소율(또는 로그 값), 살균(또는 항균 등)'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3 가지(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만 하셨기 때문에, 3 가지 균에 대한 정보를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성적서 내에 *Escherichia coli*, *Pseudomonas aeruginosa*, *Staphylococcus aureus* 결과

- ① 표적생물체의 한글명칭을 포함하여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대장균(*Escherichia coli* ATCC 8739) 99.99 % 살균
 - 대장균(*Escherichia coli*) 99.99 % 살균
- ② 표적생물체의 영문명칭으로만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Escherichia coli* ATCC 8739 99.99 % 살균
 - *Escherichia coli* 99.99 % 살균
- ③ 입증자료 3건의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①, ②와 같이 각각 개별 표시
 - *Escherichia coli* / *Pseudomonas aeruginosa* 99.99 % 살균
Staphylococcus aureus 99.9 % 살균
 - *Escherichia coli* / *Pseudomonas aeruginosa* 99.99 %, *Staphylococcus aureus* 99.9 % 살균

9. 위해성평가



관련 조항 및 참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제6조(표시기준)
- [별지 제6호 서식] 위해성평가 신청서
- [별지 제9호 서식]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Q9-1.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을 제조하는데 방출량 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기청정기용, 에어컨용으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품을 개발하면서 새롭게 출시될 제품에 보존용물질로 '은(CAS No.7440-22-4)'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중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에 '은(CAS No.7440-22-4)'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위해성평가를 받은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9호 서식]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와 함께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 및 물질별 방출량에 따른 위해성평가 자료 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Q9-2. 마스크용 방향제 패치는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나요?

현재 마스크에 붙이는 방향제 패치를 판매하고자 준비하는 중입니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마스크에 부착하는 방향제 패치는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마스크용 방향제 패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방향제에 해당하나 별도 위해성 평가 진행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용 방향제는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나 안전기준 설정 시에 반영되지 않은 용도임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그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스크 살균제 및 탈취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대상제품에 해당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1800-12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9-3. 사용가능 주성분 외 물질을 살균제 주요물질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살균제 품목에서 용도에 따른 사용가능 주성분이 명시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살균제 제품을 개발 중이나, 고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용가능 주성분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규정된 위해성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신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가능 주성분 이외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 물질로 고시된 살균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대상 여부(문의: 국립환경과학원, 1800-4840) 확인 ② 위해성평가 신청(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00-0490) ③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인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제도 이행
Q&A 모음집

03

부록

제조 공정 단계별
부적합 제품 발생 원인

제조 공정 단계에서는 어떤 원인이 문제가 되어 부적합 제품이 발생할까?

 **원료구입**

구매 된 원료 중 부가적으로 함유된 유해물질이 제품에 포함되어 부적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료보관**

취급 또는 보관 조건이 맞지 않아 원료의 산화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부적합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조공정**

혼합과정에서의 화학반응 또는 공정상의 오염 등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부적합된 사례가 있습니다.

 **포장공정**

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용기 등에서 유해물질이 제품으로 용출되거나 전이되어 부적합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통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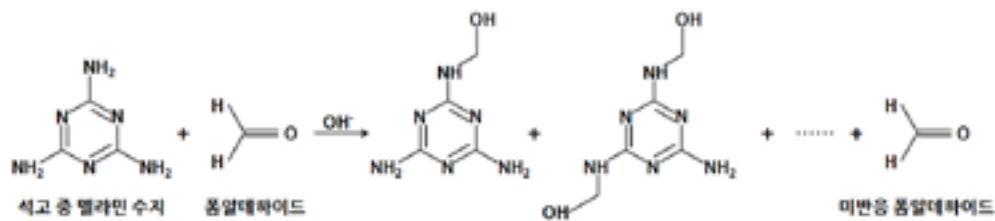
제품 유통 시 활약서로 대체하는 금지물질 등이 검출되어 위반제품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Q1. 같은 향을 사용하여 디퓨저와 석고방향제를 만들었는데, 석고방향제만 시험·검사기관에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새로 공방을 창업하여 디퓨저와 석고방향제를 만들었습니다. 동일한 원료를 가지고 디퓨저와 석고방향제를 만들어서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확인결과서를 받았는데 석고방향제만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원료로 만든 디퓨저는 합격이 되었는데 석고방향제는 왜 불합격일까요?

A. 사용하신 석고에 멜라민 수지가 함유된 경우 석고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석고에는 멜라민이라는 수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멜라민 수지는 멜라민과 폼알데하이드의 반응으로 생성되며, 이 때 반응하지 않고 남은 폼알데하이드가 멜라민 수지와 함께 석고 원료에 포함되어 폼알데하이드가 검출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석고 구매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여 석고에 첨가된 물질 중 멜라민 수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석고 중 멜라민 수지 합성 과정 >

Q2. 향균 기능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습니다.

세정제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향균 기능을 추가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새로운 원료들을 사용하여 세정제를 제조하고, 내부적으로 품질시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제품의 레시피를 개발하여 신제품으로 출시해보려고 시험분석을 하였는데, 품질검사팀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품에 폼알데하이드를 첨가한 적도 없고, 원료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폼알데하이드가 함유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걸까요?

A. 폼알데하이드가 생성되는 주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특정한 화학물질은 혼합 시에 분해되어 폼알데하이드를 생성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향균 작용이 있는 브로노폴(bronopol)은 온도와 pH에 따라 폼알데하이드를 생성합니다. 제품의 제조 과정 중에 폼알데하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용된 원료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폼알데하이드가 생성되는 주요 물질	CAS No.
브로노폴 (bronopol)	52-51-7
브로니독스 (bronidox)	30007-47-7
하이드록실 글리신산 메틸 나트륨 (sodium hydroxyl methyl glycinate)	70161-44-3
디엠디엠 하이단토인 (DMDM hydantoin)	6440-58-0
디아졸리딜닐 요소 (diazolidinyl urea)	78491-02-8
이미다졸리딜닐 요소 (imidazolidinyl urea)	39236-46-9

Q3. 방향제의 향을 변경하였더니 시험·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방향제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기존의 대표제품이 인기가 좋아서 추가적인 다른 향을 판매하고자 여러 가지 향을 납품 받아서 2 가지 향료를 블렌딩하여 만든 2 종류의 제품을 시험·검사기관에 분석 의뢰를 했는데, 1개 제품이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높아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기존의 대표제품과 동일한 베이스, 동일한 용기를 사용했는데 1 개 제품에서만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이유가 있을까요?

A. 향료를 대체하거나 배합비를 조절해주세요.

폼알데하이드는 다양한 경로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물에서 오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화학물질의 산화 반응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원료의 방부제로 인하여 생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향이더라도 제조사가 다르면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폼알데하이드는 시험·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향료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면 배합비를 조절하거나 다른 향료로 대체하기를 권장합니다.

Q4. 물체 도색제에서 벤젠이 검출되었습니다.

자동차 흠집을 제거해주는 자동차 도색펜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제품에는 벤젠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품질 검사할 때마다 벤젠이 계속 검출되어 물체 도색제의 기준이 초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희석 용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벤젠의 함유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료에서 벤젠이 나오는 걸까요?

A. 알데하이드가 생성되는 주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원유를 정제하여 얻어지는 용제는 불순물의 형태로 벤젠이 함유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용제는 비점에 따라 1호에서 10호로 구분되며 1, 3, 5호는 용제, 도료, 도장, 안료, 잉크 페인트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1호와 5호는 벤젠이 약 0.3 % 검출되는 반면에, 3호의 경우 미량으로 벤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용제의 등급별로 벤젠 검출량에 차이가 있으니, 해당 제품의 벤젠 기준을 고려하여 알맞은 용제를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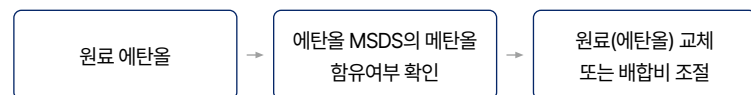
제품명	주요 용도
용제 1호(1)	도장, 페인트
용제 1호(2)	
용제 3호	드라이크리닝 세탁제
용제 5호	페인트, 방수제, 세척제
용제 6호	기타 용도: 세척제, 방청제, 윤활유, 코팅제, 합성수지 접착제, 테이프 접착제, 방수자재, 폴리우레탄 이형제, 이음방지제, 내장재, 바니쉬 등
용제 7호	
용제 8호	

Q5. 방향제에서 메탄올이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ODM 제품으로 방향제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개발 초기에 사용하였던 디퓨저 베이스로 인해 완제품이 어린이보호포장에 적용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어린이보호 포장 적용 물질이 아닌 에탄올이 함유된 디퓨저 베이스로 변경하여 제품을 개발 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확인결과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메탄올 기준을 초과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품의 제조와 원료에 메탄올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A. 사용된 디퓨저 베이스의 에탄올에서 메탄올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매하는 에탄올은 공업용 에탄올입니다. 이러한 공업용 에탄올에는 음용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물질들을 첨가하며, 첨가물질의 종류에는 메탄올, 석유, 피리딘, 착색제 또는 데나토늄 벤조에이트 등이 있습니다. 만약 에탄올에 메탄올이 기타 첨가물로 함유되었을 때, 방향제의 메탄올 안전기준 0.2 %를 초과한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이 됩니다. 에탄올의 원료 구매 시 제공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메탄올이 함유되었는지, 함유가 되어있다면 얼마큼 들어있는지 확인하여 제품을 제조해야 합니다.



Q6. 특수목적코팅제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습니다.

에탄올 용매에 김서림 방지 물질을 첨가하여 특수목적코팅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시 다른 물질은 다 합격인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MSDS를 확인해도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함유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시험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A. 사용하신 에탄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판매되는 에탄올의 순도는 주로 70 % ~ 75 %, 95 %, 99.5 %입니다. 에탄올에 표기된 순도 이외는 불순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순물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알데하이드류가 함유될 수 있으며, 간혹 MSDS에도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료(에탄올)를 구매하신 곳에 문의하여 알데하이드류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에탄올의 규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SPEC
중금속(Pb로서)	0.0002 % 이하
메틸알콜	0.02 % 이하
벤젠 및 기타 유기 불순물	한도내
퓨젤유	0.00 4 %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0.01 % 이하
함량	94.8 ~ 96.8 %
산(as CH ₃ COOH)	0.002 % 이하
밀도(20°C,g/mL)	0.804 ~ 0.812

< 에탄올 규격 예시 >

Q7. 방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방향제가 불합격 되었습니다.

얼마 전 S기업 브랜드로 판매되는 ODM 제품의 디퓨저 샘플을 제조하여 확인결과서를 받기 위해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했는데,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불합격 확인결과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저희는 방향제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이 완료된 제품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제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서 생산된 제품인데 폼알데하이드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A. 원료에 대한 보관 방법과 취급 주의사항을 준수해주세요.

원료 보관 방법에 따라 폼알데하이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료를 구입 시 제공받은 취급 및 보관방법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퓨저 베이스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 글리콜류 성분(다이프로필렌글리콜(DPG), 프로필렌글리콜(PG) 등)은 탈수-산화 반응을 통해 폼알데하이드가 생성될 수 있으니 용기를 밀폐하여 보관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이프로필렌글리콜(DPG)의 저장 기간은 1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급 및 보관 방법,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저장방법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십시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십시오
- 습기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 용기는 그늘진 곳에 보관하십시오

< 다이프로필렌글리콜의 취급 및 저장방법 예시 >

Q8. 수작업으로 제조한 미용 접착제가 불합격 되었습니다.

미용 접착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원료를 사용하여 눈썹용 순간접착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공장 사용료가 부담되어 최근부터 직접 제조하여 시험·검사를 받아보니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합격인데, 직접 제조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A.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원료는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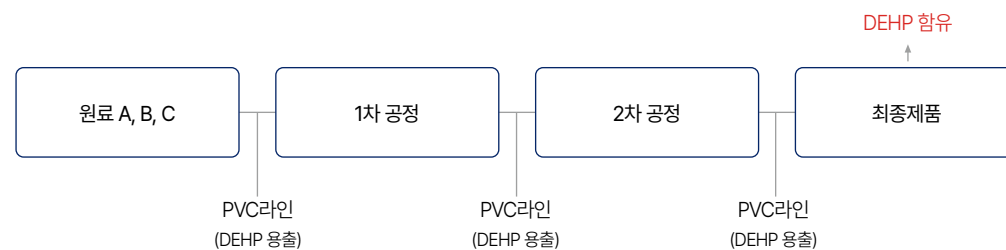
제조 과정 중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원료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생성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시아노아크릴레이트는 순간접착제의 주요성분으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시아노아크릴레이트에는 아크릴기(아크릴레이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크릴기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순간접착제 역할을 하지만 폼알데하이드를 생성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아노아크릴레이트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수분으로 인해 아크릴기의 중합 반응이 생성되어 물과 부산물로 폼알데하이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 과정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생성되지 않도록 수분과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반응기와 포장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9. 녹 방지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되었습니다.

녹 방지제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안전기준 시험·검사에서 프탈레이트의 한 종류인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라는 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료부터 제조과정까지 원인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프탈레이트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A. 공정라인(PVC 재질)에서 용출되어 제품 중에 검출될 수 있습니다.

DEHP(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은 딱딱한 재질의 PVC(polyvinyl chloride)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되는 가소제의 한 종류입니다. PVC 재질의 공정라인을 사용할 경우, 제조에 사용되는 용매 등에 의해서 PVC로부터 DEHP가 용출되어 제품에서 검출될 수 있습니다. 공정라인을 무슨 재질로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PVC 재질을 사용한 경우 금속(스테인레스 등)으로 변경할 것을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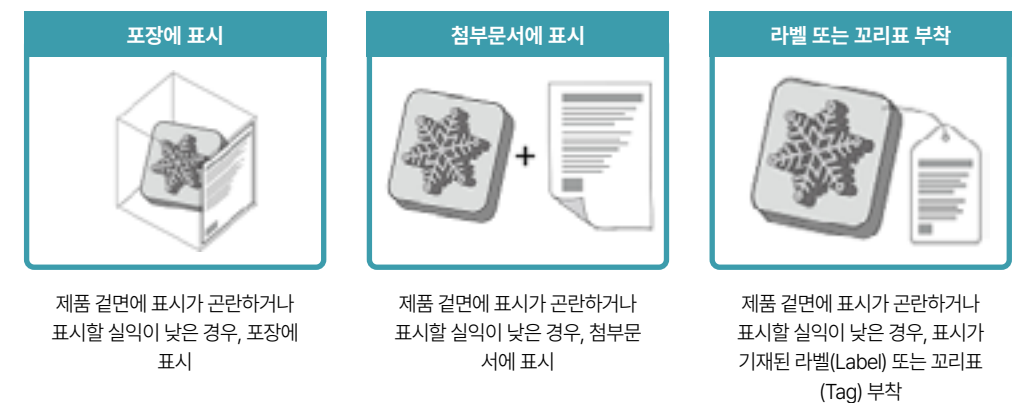


Q10. 원료나 제조 과정에서 폼알데하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품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석고방향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석고방향제의 폼알데하이드 검출 원인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품에 사용된 석고와 향료, 유화제 등 사용했던 재료를 전부 시험·검사를 하였으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석고방향제 완제품에서 검출될 수 있나요?

A.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 또는 포장재를 확인해주세요

석고방향제에 부착된 라벨스티커 및 포장재(티슈, 랩) 등 부자재가 원인이 되어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접착제에 사용된 유기용제, 포장재에서 사용된 보존제로 인해 폼알데하이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착제가 있는 표시라벨을 제품에 직접 부착하지 말고 아래처럼 표시하시기 바라며, 폼알데하이드가 나올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11. 미용 접착제를 팔고 있는데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고 순간접착용 미용 접착제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합격을 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위반제품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용 접착제의 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검출되어 위반제품이라고 합니다.

A. 함유금지물질은 시험분석을 통해 함유여부를 확인하거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로 대체하실 경우에는 MSDS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함유금지물질은 시험·검사 또는 확약서 제출로 함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유금지물질은 기업에서 요청할 경우, 시험분석을 진행하거나 확약서에 비함유라고 작성해주시면 비함유·비사용 확약서로 같음하게 되어있습니다. 확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원료를 제조하는 기업에게 함유금지물질의 목록을 전달하여 함유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확약서로 제출하신 후 추후에 함유금지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를 받게 되니 유념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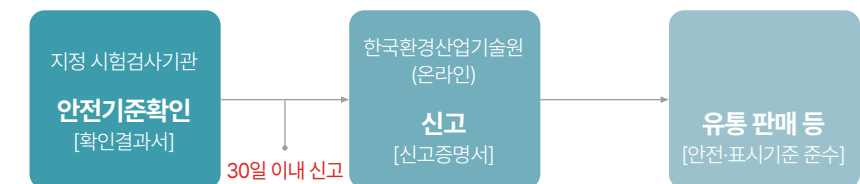
* 순간접착제에 주로 사용되는 원료에는 에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와 부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가 있습니다. 에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에는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메틸메타크릴레이트 중합체)가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틸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12.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판매했는데, 위반제품이라고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완제품과 같이 시험·검사기관에 의뢰를 하였고, 확인결과서에 적합으로 나와 안심하고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얼마 뒤 불법제품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전한 제품을 판매 했는데 왜 불법제품으로 신고가 되었을까요?

A.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고 표시사항을 준수하신 후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통해 적합 확인결과서를 받으신 후 30일 이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된 이후 신고증명서가 발급되면 신고번호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할 법적인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유통·판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불법제품이 되며 제품의 회수 조치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니 유념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제도 이행 Q&A 모음집

발행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행일	2022년 11월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전화번호	1800-0490
홈페이지	http://www.keiti.re.kr https://chemp.me.go.kr